

질의요지	답변요지
김병우 위원) ○ 동·면의 인원은 감소되고 업무수요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? 프로그램에 따라 사설강습소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?	자치행정국장 강경구) ○ 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평가보교회 등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. 업무의 효율을 위해 사용료는 동·면장이, 수강료는 자치위에서 관장토록 함.
한규태 위원) ○ 자원봉사자 수당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불합리, 지금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인데 봉사? 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하는데 자치? ○ 행·재정적 손실위험이 있으므로 시행착오가 많은 정부의 정책을 미리 앞서 간 필요는 없음.	자치지원과장 박현진) ○ 동 기능전환이 우선되어야 함. 주민자치에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안 되고 있음. 회계관리를 이원화하여 강사수당만큼은 자치위에 재량권을 줌.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. ○ 앞서 간 것은 없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없음 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원안가인

7.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

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4월 25일 김포시장
 나. 회부일자 : 2002년 5월 2일
 다. 상정일자 : 2002년 5월 2일
 라. 의결일자 : 2002년 5월 4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미래사회의 주역이 된 지역 청소년에게 개방형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문화, 예술, 정보, 취미활동, 동아리 모임으로 인한 열린 청소년 문화의 장을 보호·육성시키 나가는데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정함.(안 제3조)

-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을 정합.(안 제4조)
-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 명시(안 제5조, 제6조)
-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 명시
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겸임보고요지(전문위원 이정찬)

- 본안건은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거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며,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보조금 2억원을 포함한 시선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고, 통진문화회관에 기 설치계획이 있었던 청소년문화의집에 이를 적용함과 아울러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대 운영키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.
- 따라서 향후 동 시설의 확충계획을 비롯한 재원확보, 인력운영, 위탁계획, 기여효과 등을 진단해 보시고 시립도서관의 개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김포문화의집과의 운영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한규태 위원) <input type="radio"/>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, 용도상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문제가 없나? <input type="radio"/> 예산지원을 최소화하고 자활토록 해야...	자치행정국장 강경구) <input type="radio"/> 사용료를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함. 추후 건물이 분리 확보된다면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음. <input type="radio"/> 시비를 투자하지 않을 수는 없음.
김창집 위원) <input type="radio"/> 김포문화의집과 운영방법이 비슷할 것,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있나?	자치행정국장 강경구) <input type="radio"/> 공단에서 담당직원을 둘 것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없음 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